

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. 2. 16 선고 2021가단5591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
피 고 A

변 론 종 결 2022. 1. 12.

판 결 선 고 2022. 2. 16.

주 문

1.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B 사이에 2020. 8. 4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나. 피고는 B에게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. 8. 27. 접수 제33825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 이인민

별지